

소년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활용 방안 연구  
(개인 훈련)

2024년 4월

법 무 부  
(양 형 석)

## 국외훈련 개요

1. 파견국가 : 영국
2. 교육기관명 : 포츠머스 대학교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교  
(Schoo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Portsmouth)
3. 교육분야 : 소년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활용  
방안 연구
4. 교육기간 : 2023. 10. 10. ~ 2024. 4. 4.

## < 훈련기관 개요 >

교육기관 명칭	포츠머스 대학교,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교 (Schoo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Portsmouth)	
교육기관 성격	대학부설연구소	
기관 소재지	Park Building, King Henry 1 Street, Portsmouth, UK	
홈페이지	<a href="https://www.port.ac.uk/about-us/structure-and-governance/organisational-structure/our-academic-structure/faculty-of-humanities-and-social-sciences/school-of-criminology-and-criminal-justice">https://www.port.ac.uk/about-us/structure-and-governance/organisational-structure/our-academic-structure/faculty-of-humanities-and-social-sciences/school-of-criminology-and-criminal-justice</a>	
설립목적	범죄학,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	
주요기능 및 수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학, 형사사법, 범죄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및 교육 과정 운영</li> <li>• 보호관찰소,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 높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li> </ul>	
주요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nne Murphy</b> (executive Dean of the Facult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li> <li>• <b>Dr. Aaron pycroft</b> (Associate Professor in Criminal Justice and Social Complexity)</li> <li>• <b>PhD Dennis Gough</b> (Course Leader Professional Doctorate in Criminal Justice)</li> <li>• <b>Michelle McDermott</b> (Senior Lecturer in Community Justice)</li> </ul>	
교섭창구	Dr. Aaron pycroft	
	전화 : +44(0)23-9284 2992	E-mail : Aaron.Pycroft@port.ac.uk

# 목 차

I. 서론 .....	6
1. 연구 목적 .....	6
2. 연구 방법 .....	7
II. 한국의 전자감독 .....	8
1. 도입 배경 및 제도 시행 .....	8
2. 제도의 변화 .....	9
3. 관련 통계 .....	10
4. 성과 .....	12
5. 당면 과제 .....	13
III. 한국의 청소년 대상 전자감독 .....	16
1. 한국의 청소년 범죄 .....	16
2. 외출제한명령 .....	18
3. 청소년 대상 전자감독의 활용 방안 논의 .....	20
IV. England와 Wales의 전자감독 .....	22
1. 도입 배경 및 시범 실시 .....	22
2. 도입 및 변화 .....	23
3. 관련 통계 .....	29
4. EMS(Electronic Monitoring Services) .....	32
5. 전자감독에 대한 규정 준수 .....	34
6. 관련 장비 .....	35
7. 전자감독의 효과 .....	38

V. England와 Wales의 청소년 대상 전자감독 .....	39
1.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정부의 처우 동향 .....	39
2. 청소년 범죄 관련 주요 통계 .....	40
3. 전자감독의 활용 분야 .....	42
4. 전자감독의 작동 방식 .....	50
5. 위반 관련 .....	53
6. 재범률 감소 .....	55
VI. 전자감독을 넘어서 .....	57
1. Multit-agency working .....	58
2.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61
3. 직원 전문성 제고 .....	63
4. 팀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장기적인 프로그램 추진 .....	65
VI. 결론 및 제언 .....	67
1. 청소년 대상 전자감독 활용 방안 .....	67
2.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 .....	69
3. 낙인효과 감소, 자존감 향상 .....	70
References .....	72
【별첨1】 국외훈련 관련 사진 .....	77
【별첨2】 YOT 서면 질문 및 답변지 .....	78

# 소년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활용 방안 연구

## I. 서론

### 1.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는 많은 논란 끝에 2008년 9월에 도입되어 이제 15년이 지났다.

미국 및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교도소의 과밀 수용 해소, 단기 구금의 대체를 주목적으로 하여 경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한 것이 반해, 우리나라는 2000년대초 성폭력 사건의 연이은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자감독이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 전자감독제도는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 범죄 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면서 그 효과를 인정받았으며, 이후 미성년자유괴사범·살인사범·강도사범 등 다른 강력사범을 그 대상에 포함했다.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는 스토킹 사범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나는 2007년부터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첫걸음부터 현재까지의 발전과 변화 과정 등을 간접적으로 지켜봐 왔다. 이번 연구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2022년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전자감독제도는 다른 어떤 형사사법 제도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성인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부터였다.

사실상 대중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전자장치를, 청소년에게까지 부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에 대한 전자감독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활용 방식에 따라서는 구금을 대체하여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사회와의 단절을 예방할 수도 있다.

나는 청소년 대상 전자감독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England와 Wales의 전자감독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England와 Wales는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감독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활용 분야 또한 외출제한명령(curfew orders), 감독명령(supervision orders), 사회복귀명령(community rehabilitation orders), 보석조건부 석방(bail)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포츠머스대학교 범죄학과 교수진과의 논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재범률 감소와 건전한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되는 Multi agency-working,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등에 대해서도 다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내실화 및 청소년으로까지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의 Schoo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소속 Dr. Aaron Pycroft의 지도·감독 아래에 진행되었다.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현직 법무부 공무원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활용하였다.

## II. 한국의 전자감독

### 1. 도입 배경 및 제도 시행

#### 1) 국민 여론

전자감독 제도 도입 이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상당히 부정적<sup>1)</sup>이었다. 언론 또한 전자장치를 ‘전자 족쇄’, ‘사이버 감옥’ 등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등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후 2005년 4월 당시 여당 의원이 국회 연설에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많은 기관과 대학교 등에서 전자감독과 관련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2) 법률의 제정

2006년 2월 서울에서 한 초등학생이 성폭력 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형사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sup>2)</sup>. 2005년 7월에 전자감독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sup>3)</sup>되었으나, 제도를 반대하는 일부 여론으로 인해 심의가 지체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여론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기나긴 논란 끝에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제도의 시행일은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 10월 28일로 규정되었다.

---

1) 동아일보(1999. 10. 12.)

2) 문희갑, (2020), ‘전자감독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호관찰’ 제20권 제1호, 한국보호관찰학회 84면

3) 최초 발의안은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에 대해서 보호관찰은 병과되지 않았고, 이동 경로 등 수신 자료를 보관만 하면서 추후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판 시 활용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 2. 제도의 변화

### 1) 법률의 개정 방향

전자감독제도 관련 법률은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7회 개정(타법 제외) 되었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상 범죄 및 활용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법률의 입법 목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08년부터 2019년까지는 법률의 목적이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해 하여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이었다면, 2020년 이후의 법률의 목적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로 변경되었다.

### 2) 주요 개정 내용

제도 시행 전인 2008년 초에 발생한 ‘안양시 초등학교 납치 살인사건’과 ‘일산시 초등학교 납치 미수사건’으로 인해 더 강력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는 결국 전자감독제도의 시행일을 앞당기고 (2008년 10월 28일→2008년 9월 1일) 최대 부착 기간을 연장(5년→10년) 하는 내용의 1차 개정을 이끌어냈다<sup>4)</sup>.

2009년 4월 2차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를 추가하였다.

이후 김○○·김○○ 등 전자감독제도 시행 전에 성폭력을 범한 범죄자들이 제도 시행 이후에 재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전자장치를 법 시행 전의 성폭력 범죄 전력자에게도 부착해야 한다는 여론

---

4) 문희갑, (2020), ‘전자감독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호관찰’ 제20권 제1호, 한국보호관찰학회 87면. - 부착기간 확대의 근거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없으며, 이것은 전자감독제도 시행도 되기 전이므로 5년이라는 부착기간에 대한 효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거세졌다. 결국 제정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을 소급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대상에 살인죄를 포함하는 등의 3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12년 12월 4차 법률 개정에서는 강도죄를 추가하였으며, 2020년 2월 법률 개정에서는, 명칭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을 도입하였으며, 가석방되는 모든 범죄를 전자감독의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자감독제도를 형사 사범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sup>5)</sup>.

그리고 2022년에 발생한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2023년 10월부터는 스토킹 범죄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포함되었다.

### 3. 관련 통계<sup>6)</sup>

#### 1) 전자감독대상자 연도별 현재원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2,981	3,126	3,111	4,052	4,316	4,170

전자감독대상자 현재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전자감독 기간이 외국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2020년 8월 법 개정<sup>5)</sup>에 따라 전자감독 부착 대상 가석방 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된 것 또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토킹 사범이 전자감독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전자감독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5) 김지선, (2021), ‘현행 가석방 전자감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교정학회, 5면.

6) 2022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22년도 4분기 범죄예방정책 통계리포트(법무부)

## 2) 전자감독대상자 사범별 접수 현황

연도	총계	특정사범				일반 사범
		성폭력 사범	미성년자유과 사범	살인사범	강도사범	
2017	1,154 (100%)	504 (43.7%)	5 (0.4%)	417 (36.1%)	228 (19.8%)	
2018	929 (100%)	392 (42.2%)	2 (0.2%)	397 (42.7%)	138 (14.9%)	
2019	830 (100%)	368 (44.3%)	2 (0.2%)	302 (36.4%)	158 (19.1%)	
2020	2,383 (100%)	417 (17.5%)	2 (0.1%)	311 (13.1%)	128 (5.4%)	1,525 (64.0%)
2021	5,599 (100%)	321 (5.7%)	1 (0.0%)	373 (6.7%)	147 (2.6%)	4,757 (85.0%)
2022	2,717 (100%)	249 (9.1%)	2 (0.0%)	282 (10.4%)	145 (5.4%)	2,039 (75.1%)

전체 접수사건은 2017년 1,154건에서 2018년 929건, 2019년 830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가석방 대상이 일반범죄로까지 확대되면서 추세가 반전되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7%,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5% 폭증하였다. 그러나, 가석방 인원 감소로 인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8%로 감소하였다.

#### 4. 성과

##### 1) 재범 감소

최초 시행부터 강력 성폭력 사범의 재범 억제를 목표로 하였던 만큼,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재범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sup>7)</sup>

이는 실시간 위치 파악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이 밖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개별심리치료 실시 등이 재범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며,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그 효과를 알 수 있다.<sup>8)</sup>

##### <전자감독 대상 범죄별 동종 재범률에 대한 비교>

구분	비 전자감독대상자 (’03.~’07. 평균) <sup>9)</sup>	전자감독대상자 (’17. ~ ’21. 평균) <sup>10)</sup>	비고
성폭력	14.1%	1.8%	1 / 8
살인	4.9%	0.0%	1 / 49
강도	14.9%	0.2%	1 / 75

통계를 보면 재범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가 가장 낮은 재범률 감소를 보이거나, 재범률을 14.1%에서 1.8%로 낮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강도 사범의 경우 비교적 재범 욕구가 낮은 범죄일 뿐 아니라 재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동선 이동을 수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에 따른 검거를 두려워하여 재범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7)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억제 효과는 교도소 구금 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감독이 종료된 대상자들의 재범률을 공식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조운오. (2010),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저항이론 관련 요인 분석”, 「형사정책연구」, 21(2) : 289-317.

8) 전자감독 10년사(법무부), 65페이지

9) 2022 범죄분석(대검찰청)

10)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2023. 10. 25. 검색)

## 2) 사회적 비용 절감

전자감독제도는 사회내처우이기 때문에 구금과 같은 시설내처우보다 경제적인 제도이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전자감독대상자 1인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구금에 필요한 비용의 약 15%에서 20%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sup>11)</sup>

또한 전자감독 대상인 특정 범죄(성폭력, 살인 등)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발생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건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의 사회적 비용은 성폭력 2억원, 살인 173억원, 미성년자유괴 850억원, 강도 4,500만원 정도로 산정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10년 동안 약 10조 1000억원(성폭력 범죄 약 4,158억 원, 살인 범죄 약 9조 5,260억원, 강도 약 141억원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한다.

## 5. 당면과제

### 1)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문제

전자감독제도가 도입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또 다른 이유는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 부착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다<sup>12)</sup>. 또한 이와 관련한 많은 재판을 통해 전자감독은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가 없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형사정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11) 박숙완, (2020), ‘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한 사회내 구금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검토’, 교정복지연구 제67호, 한국교정복지학회, 152면

12) 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결정. -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준수사항의 부과가 개별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전자감독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전자감독에 의한 사생활과 인권 침해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전자감독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전자장치를 통한 감시이다.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전자감독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자감독대상자가 재범할 경우, 그에 따른 대책으로 다양한 기능과 대책이 추가되고 있으며, 이는 곧 준수사항을 잘 따르며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사회화에 장애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 2) 부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자감독대상자는 최대 45년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부착 기간은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훼손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게 하여 재범하게 만들 수도 있다. 어느 언론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자살률이 일반 국민의 자살률보다 약 20배나 높다는 기사를 작성하였다.<sup>13)</sup> 관련 통계의 신빙성을 떠나, 전자감독대상자의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은 사실인 듯 하다. 따라서 향후 부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낙인 효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자감독 제도는 일련의 강력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전자감독대상자를 성폭력 범죄자로 간주하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가 피감독자에게 주는 낙인효과는 다른 어느 외국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

13) 내일신문(2015. 11. 9.)

이러한 낙인효과는 결국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재사회화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이러한 낙인효과를 해결하는 것은 전자감독제도를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하겠다.

### Ⅲ. 한국의 청소년 대상 전자감독

#### 1. 한국의 청소년 범죄

##### 1)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시각

지난 2017년 부산에서 한 청소년이 또래의 여중생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CCTV가 공개되어 대중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범죄에 대한 강경한 여론이 조성되었고, 청와대에는 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많은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9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sup>14)</sup>까지 나왔다. 이후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청소년 강력범죄는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

##### 2) 청소년 범죄 관련 통계

<청소년 범죄 유형별 사건수 및 구성비 (2017년~2021년)><sup>15)</sup>

구분 연도	계	홍악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기타범죄
2017	58,255건 (100%)	3,463건 (5.9%)	21,043건 (36.1%)	29,056건 (49.9%)	4,693건 (8.1%)
2018	54,205건 (100%)	3,509건 (6.5%)	19,742건 (36.4%)	26,497건 (48.9%)	4,457건 (8.2%)
2019	54,497건 (100%)	3,665건 (6.7%)	18,622건 (34.2%)	27,809건 (51.0%)	4,401건 (8.1%)
2020	50,969건 (100%)	3,134건 (6.1%)	14,774건 (29.0%)	28,855건 (56.6%)	4,206건 (8.3%)
2021	42,388건 (100%)	3,606건 (8.5%)	13,614건 (32.1%)	21,785건 (51.4%)	3,383건 (8.0%)

14) 리얼미터, 소년법 관련 여론조사(2017. 9. 8.)

15) 2022 범죄백서(법무연수원)



위 표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 등을 반영하여 전체 소년 범죄 건수는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0년, 2021년의 전체 범죄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흉악범죄(강도·강간·살인 등)는 2017년에 전체 소년 형법범죄의 5.9%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8.5%를 차지하여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포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 형법 범죄 연령별 현황 (2017년~2021년)><sup>16)</sup>**

연령 연도	계	14~15세		16~17세		18세	
		인원	범죄 발생비	인원	범죄 발생비	인원	범죄 발생비
2017	58,255건 (100%)	17,695건 (30.4%)	1,788.9	26,112건 (44.8%)	2,177.4	14,410건 (24.7%)	2,325.2
2018	54,205건 (100%)	17,946건 (33.1%)	1,854.2	22,860건 (42.2%)	2,168.7	13,399건 (24.7%)	2,098.2
2019	54,497건 (100%)	18,721건 (34.4%)	2,056.0	22,195건 (40.7%)	2,246.7	13,581건 (24.9%)	2,430.8
2020	50,969건 (100%)	18,251건 (35.8%)	2,059.3	20,703건 (40.6%)	2,141.0	12,015건 (23.6%)	2,432.0
2021	42,388건 (100%)	15,977건 (37.7%)	1,747.3	17,030건 (40.2%)	1,819.0	9,381건 (22.1%)	1,906.7

※ 범죄발생비는 소년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

위 표를 보면 14~15세의 범죄 비율이 2017년 30.4%에서 2021년 37.7%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년범죄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 2022 범죄백서(법무연수원),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 (2018년~2022년)><sup>17)</sup>**

연도	전체	소년	성인
2018	7.2%	12.3%	5.1%
2019	7.2%	12.8%	5.0%
2020	7.3%	13.5%	5.0%
2021	6.4%	12.0%	4.5%
2022	6.0%	12.0%	4.1%

위의 재범률 통계는 보호관찰대상자로 한정되기는 하였으나, 성인보다 청소년의 재범률이 약 3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등 담당 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재범 예방과 재사회화가 쉽지 않은 일임을 짐작하게 해 준다.

## 2. 외출제한명령

### 1) 우리나라의 외출제한명령

외출제한명령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에 법무부에는 「외출제한명령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56.4%인 6,681명이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았으며, 현재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17) 2022년 4분기 범죄예방정책 통계리포트(법무부)

## 2)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

### ○ 시스템 개요

외출제한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2003년 3월 법무부에서는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CVS, Curfew Supervising Voice Verification System)을 개발하였다. 먼저 서울보호관찰소를 포함한 4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CVS를 활용하고 있다.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은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컴퓨터가 대상자의 거주지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의 목소리와 시스템에 등록된 목소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상자의 재택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대상자의 생체 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재택 여부를 감독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전자감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 단점 및 보완 필요사항

전화를 이용한 외출제한명령의 운영은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시 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성 확인 후 무단 외출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깊은 잠으로 전화를 못 받거나, 감기 등으로 인해 본인이 전화를 받았음에도 음성이 불일치되는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새벽시간의 전화로 인해 대상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수면권을 침해함에 따른 민원 제기도 증가하고 있다. 나 또한 소년보호관찰을 담당하였을 때, ‘잠이 너무 깊게 들어 벨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청소년 대상자들의 변명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음성 감독을 위한 CVS는 대상자의 외출 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범률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외출제한명령 부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2017년~2021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4%	8.6%	8.2%	8.8%	9.1%

### 3. 청소년 대상 전자감독의 활용 방안 논의

#### 1) 도입의 필요성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아직 성인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히지는 않았다<sup>18)</sup>. 이는 전자감독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전자장치 부착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전자감독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치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뿐 아니라, 기존의 사법 시스템으로는 청소년 범죄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보호관찰의 경우, OECD 선진국은 보호관찰관 1인당 2~30명을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평균 120명의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어 면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소년원의 경우에는, 과밀 수용, 범죄 학습, 낙인효과, 사회와의 단절 등의 부작용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전자감독제도 도입 후 15년이 지난 지금이 소년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도입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된다. 이미 전자감독제도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자감독 운영에 필요한 고도의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정밀한 전자장치 또한 제작·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에서는 이미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감독제도를 성공적

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성인이 된 이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재범억제·과밀 수용 해소·교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2) 영국의 청소년 대상 전자감독제도

이 시점에서 나는 영국의 제도와 사례에 대해 주목하고 싶다. 영국은 1989년 유럽에서 전자감독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나라이다. 그리고,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감독을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으며, YOT(Youth Offending Team)라는 특수한 기관을 통해 소년 범죄자들을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음 장부터는 영국의 전자감독제도의 개요에 대해 살펴본 다음, England와 Wales가 오랜 기간 동안 소년 대상 전자감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소년 전자감독대상자들을 어떻게 지도·감독하는지, 한국의 전자감독제도가 더 발전하고 청소년에게까지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 IV. England와 Wales의 전자감독

### 1. 도입 배경 및 시범 실시

#### 1) 도입 배경

England와 Wales에서의 전자감독의 도입은 1960년대 이후 구금시설의 과밀화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sup>19)</sup>

먼저 1980년대 초에 언론인인 톰 스테이시(Tom Stacey)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전자감독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후 1987년 내무위원회(The Home Affairs Committee)가 자체 보고서(state and use of prisons)를 통해 영국에서의 전자감독 시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1988년에 영국 정부는 관련 시찰단을 미국에 파견하고<sup>20)</sup>, 시범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England와 Wales에서는 이미 Criminal Act(1982)에 따라 청소년 대상 야간외출제한명령이 운영중에 있었으나, 마땅한 감독시스템이 없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가 없었다. 결국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시작한 전자감독이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이 England와 Wales에서 전자감독을 시작한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Mair & Nee, 1990)

#### 2) 시범실시

England와 Wales의 보호관찰 관련한 기관인 ACOP(Association of Chief Officers of Probation)<sup>21)</sup>와 NAPO(National Association of Probation Off

---

19) 김혜정, 전자감독제도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부착명령 대상범죄 및 부착기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법무부 정책연구보고서, 2015, 93면.

20) 미국은 세계 최초로 1987년부터 1세대 시스템인 가택구금 방식의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21) ACOP는 보호관찰 서비스 내 고위 보호관찰관 및 지도자를 대표하는 전문 협회

icers)<sup>22)</sup>는 전자감독제도에 대해 대상자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인권 침해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결국 이러한 기관들이 전자감독의 도입과 시범 실시 참여를 거부<sup>23)</sup>하였기 때문에 내무부(Home Office)에서는 사기업을 통해 시범실시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부가 전자감독을 총괄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England와 Wales의 전자감독은 정부에 의해 보호관찰 서비스와 통합되기보다는 민간 부문에 의해서 개발되고 발전되어 갔다. (Nellis, M. 2003)

시범실시는 1989년에 3개의 지역에서 약 50명의 미결구금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석과 구금감소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였다. 이는 특별 법안의 제정, 의회 토론 또는 직접적인 보호관찰 참여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ellis, M., Bunkerfeldt, J. 2013) 시범실시 결과, 46명 중 24명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시범실시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시범실시 이후 England와 Wales의 전자감독은 신자유주의 보수당 정부(neoliberal Conservative government)와 신노동당(New Labour) 정부를 거치면서 더 실험적으로 발전했다. (Lilly, J. R. 1990; Nellis, M. 1991; Fay, S. J. 1993)

## 2. 도입 및 변화

### 1) Criminal Justice Act(형사사법법) 1991

---

로써, 보호관찰관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관찰 관련 정책 및 전략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 NAPO는 England와 Wales의 보호관찰소 및 가정법원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3)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자감독을 최초 도입시 법무부의 의견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법무부는 법률 공포(2007. 4. 27.)부터 시행(2008. 9. 1.)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전자감독시스템과 장비를 개발하고 구축하였다.

최초 전자감독에 대한 근거는 형사사법법 1991(Criminal Justice Act)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이 때 무선 주파수 기술을 활용한 가택구금을 활용한 가석방 제도(HDC, Home Detention Curfew)가 처음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Kim, H. 2023)

또한 형사사법법 1991(Criminal Justice Act)에서는 사회내 처벌(community sentence)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16세 이상의 범죄인에 대한 독립적인 형태 또는 다른 사회내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형태의 전자감독 외출제한명령(Curfew Orders forced by electronic monitoring)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감독을 통한 외출제한명령(Curfew Orders forced by electronic monitoring) 부과시 부과시간은 하루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2시간이었으며, 최대 부착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전자감독 외출제한명령(Curfew Orders forced by electronic monitoring)을 부과할 때 해당 범죄자의 동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 2) Criminal Justice Act(형사사법법) 1991 이후의 주요 변화

최초 시범 실시 이후 전자감독에 대한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으나, 1993년에 Liverpool에서 발생한 제임스 벌저(James Bulger) 유괴 살인 사건<sup>24)</sup>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더 강한 처벌을 강조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여론으로 인해 1994년에 발효된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은 외출제한명령(Curfew)의 단계적 도입을 허용하였다.

1997년에는 Criminal Sentence Act을 제정하여, 16세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가 구금을 대신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전자감독 외출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때 주목할 만한 것은 범죄자의 동의와 상관 없이

---

24) 1993년 2월 12일 Liverpool에 위치한 어느 쇼핑 센터에서 제임스 패트릭 벌저 (James Bulger, 당시 2세)가 두 명의 가해자들(당시 10세)게 유괴 당한 후 납치, 고문, 살해된 사건이다.



법원의 선고에 따라 결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98년에는 Crime & Disorder Act 제99조와 제100조가 제정되어 재량에 따른 교도소 재소자 제도인 가택 구금 외출제한명령(HDC, Home Detention Curfew)이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1999년 1월에 즉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Nellis, M. 2003)

가택 구금 통금(HDC)의 전국 시행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구금시설의 과밀화 해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 평균 재소자 수의 증가 : 1993년, 44,566명 → 1998년, 65,298명

또한 16세 이상의 범죄인에 대해 독립된 사회내 형벌로서의 전자감독 외출제한명령(Curfew Order forced electronic monitoring)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영국은 전자감독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잠재우고자 5년에 걸친 충분한 시범실시와 여론 분석 등을 통해 1999년 1월 전자감독을 통한 HDC (Home Detention Curfew), 1999년 12월 전자감독 외출제한명령 등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후에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벌금 미납자, 보석 대상자(성인과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감독이 시범실시 되었다.

그리고 Criminal Justice Act 2003은 관사가 사회형(community orders)과 집행유예(suspended sentence orders)를 선고하는 경우 전자감독을 통한 외출제한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3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은 준수사항의 실효성 확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전자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3) 청소년 대상 전자감독

England와 Wales의 전자감독은 점차 소년 범죄자들을 그 대상에 포함하였다.

2001년에는 형사법원 권한법(the Powers of Criminal courts Act)에 통합된 (구)형사양형법에 근거로 하여, 10세~15세의 청소년 범죄자들도 전자감독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2002년 4월에는 보석법(the Bail Act)에 따라 12세 이상 16세 이하의 피의자에게 전자감독 외출제한명령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는 ‘구금-훈련명령(DTO : detention and training order)’에 처해지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가퇴원 형식의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되었다.

또한 2001년부터는 10세~17세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ISSP(Intensiv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Programmes)의 일환으로, 2003년에는 18세-20세를 대상으로 하는 ICCP(Intensive Control and Change Programme)의 일환으로 전자감독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발전을 통해, 현재 England와 Wales는 재판 전(보석 조건), 형의 선고, 조기 석방(Home detention curfew) 등 형사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전자감독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Hucklesby, A., Holdsworth, E. 2016)

#### 4) Location Monitoring(위치추적방식 전자감독)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한 1세대 방식의 전자감독은 단순히 재택장치와 부착장치간의 통신을 통해 단순히 범죄자가 집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불과했다.<sup>25)</sup>

반면, GPS를 활용한 Location Monitoring은 범죄자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이며, 범죄자가 정해진 시간에 거주지에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입이 제한된 구역의 출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

25) 우리나라는 1세대 방식인 재택구금 형태의 전자감독은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위치추적 방식의 전자감독만을 실시하고 있다.

England와 Wales가 Location Monitoring을 도입한 주된 목적은 범죄자의 출입금지명령(exclusion orders)의 준수 여부 확인 및 가석방자의 소재 확인을 위해서였다. 1997년 미국에서 먼저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2000년에 형사사법 및 법원법(Criminal Justice and Court Service Act)을 제정하여 GPS를 활용한 전자감독제도 시행을 준비하였다.

이후 2004년에 맨체스터(Manchester), 웨스트 미들랜즈(West Midlands)와 햄프셔(Hampshire)에서 가정폭력 범죄자, 상습범,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GPS 위치추적의 시범실시를 실시하였다. England와 Wales의 위치추적 모니터링은 제외 구역(exclusion zones) 준수, 특정 활동 참석(attendance at a certain activity), 청소년의 행방 확인(Trail Monitoring), 위치 모니터링(Location Monitoring) 요구 사항과 함께 부과되는 통금 시간 또는 이들의 조합을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되었다. (HMPPS, 2019)

GPS를 사용한 위치 모니터링은 2019년 말 런던 청소년 사법부에 도입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에 England와 Wales의 나머지 지역으로 시행이 확대되었다. (Docherty, S. 2019)

## 5) Trail Monitoring(추적 모니터링)

Trail Monitoring은 YOT(Youth Oending Team) 사건 담당관 등이 명령 기간 동안 언제든지 청소년의 행방에 대한 과거의 위치 정보를 EMS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 모니터링 기능이다.<sup>26)</sup> (HM Prison & Probation Service 2020 b)

YOT 사건 담당관이 Trail Monitoring을 활용하여 EMS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청소년이 특정 시간에 해당 청소년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

---

26)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전자감독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들도 U-Guard라는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England와 Wales보다 좀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② 해당 청소년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주소나 지역에 머무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 ③ 정해진 특정 시간 동안의 해당 청소년의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

## 6) Alcohol Monitoring(알코올 모니터링)

England와 Wales에서의 Alcohol Monitoring을 운영하는 Capita에 따르면, 영국 내의 전체 폭력 범죄 중 30%는 알코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알코올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215억 파운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Capita, 2023)

Alcohol Monitoring은 범죄자에게 부착된 전자장치를 통해 범죄자의 땀을 분석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sup>27)</sup> 태그는 30분마다 착용자의 피부 관독을 수행하여 사람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물론 장치 제거 시도나 관독 방해물을 감지할 수 있다. (Electronic Monitoring Statistics Publication, England and Wales: September 2023 from UK Government)

2012년의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은 범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alcohol abstinence monitoring requirement(AAMR)를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도입한 다음 전자감독을 통해 이를 운영하고 있다.

Alcohol Monitoring은 2020년 10월 Wales 법원에 도입되었으며, 새로운 community sentencing option인 알코올 금욕 및 모니터링 요건(AAMR)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3월 31일 England 법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음주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하였거나,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 구금된 후 풀려나는 범죄자를 위해 2021년 11월 Wales에서 AML (Alcohol Monitoring) 추가 면허 조건이 도입되었고 England에서는 2022년 6월에 시행되었다. 음주여부감독제도(AAMR : alcohol abstinence monitoring

---

27)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Alcohol Monitoring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requirement)는 최장 12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 3. 관련 통계

#### 1) 전자장치 종류별 사건 수(2022년 3월 31일 기준)<sup>28)</sup>

2023년말 기준으로 영국의 전체 전자감독 사건 수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22년 6월에 영국 법무부가 발표한 ‘Electronic Monitoring Strategy from Ministry of Justice’에 따르면 전자감독 전체 사건 수는 15,275건이었다. 그 중 Curfew tag(재택구금 방식의 전자장치)가 10,485건, GPS tag(위치 추적 방식의 전자장치)가 3,890건, Alcohol tag(음주 여부 확인 방식의 전자장치)가 900건이다.

#### 2) 부과 방식에 따른 사건 수<sup>29)</sup>

부과방식에 따른 사건수와 관련된 통계는 ‘Electronic Monitoring Statistics Annual Publication, March 2023, from Ministry of Justice’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 총 전자감독 사건 수

2019년 3월 기준 총 10,771건이었으나, 2020년 3월에는 10,422건, 2021년 3월에는 13,996건, 2022년 3월에는 15,394건, 2023년 3월에는 17,350건으로 증가하였다. 본 통계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전체 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보석 관련 사건 수

관련 통계를 보면, 보석과 관련한 사건 수는 상당히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

28) Electronic Monitoring Strategy(June 2022) from Ministry of Justice, 6p

29) Electronic Monitoring Statistics Annual Publication, March 2023, from Ministry of Justice

2019년 3월에는 2,543건이었으나, 2020년 3월에는 3,234건, 2021년 3월에는 5,939건, 2022년 3월에는 5,583건, 2023년 3월에는 6,284건으로 나타났다.

#### ○ 법원 선고에 따른 사건 수

보석과는 대조적으로 법원의 선고에 따른 전자감독 부과는 5년 전에 비해서 감소하였다. 2019년 3월에는 4,861건이었으나, 2020년 3월에는 3,949건, 2021년 3월에는 5,147건, 2022년 3월에는 4,959건, 2023년 3월에는 3,369건으로 나타났다.

#### ○ 구금 후 석방에 따른 사건 수

구금 후 석방(Post release)에 따른 사건 수 또한 5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9년 3월에는 3,096건, 2020년 3월에는 2,991건, 2021년 3월에는 2,592건, 2022년 3월에는 3,167건, 2023년 3월에는 4,102건으로 나타났다.

#### ○ 이민 보석 조건 전자감독 사건 수

2016년 이민법 별표 10에 따라 추방 대상인 외국인에게 보석 조건부 전자감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sup>30)</sup> 이미 보석금을 내고 의무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전자감독이 개시된다. GPS 태그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이민 보석 조건은 통금 시간 지정 및 출입금지 장소 지정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건 수를 살펴보면, 2019년 3월에는 233건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3월에 194건, 2021년 3월에 270건, 2022년 3월에 1,638건, 2023년 3월에 3,522건으로 나타났으며, 5년 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

#### ○ 알코올 모니터링 관련 사건 수

알코올 모니터링의 경우, 2021년 3월에는 36건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30) 이 조항은 "추방 명령 또는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모든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위성 추적을 도입"하겠다는 2015년 보수당 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3월에는 898건, 2023년 3월에는 2,248건으로 급증하였다.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통계 분석

영국 정부에서 전자감독과 관련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2023년 9월에 발간한 'Electronic Monitoring Statistics Publication'에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1)</sup>

- A) 전자감독을 부과 받은 전체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18,859건으로 전년 동기의 15,504건에 비해 약 22% 증가했으며, 그 이유는 GPS 태그를 부착해야하는 인원과 석방 후 알코올 태그를 부착해야 하는 집단(alcohol tag for the post release cohort)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B) 법원 보석 명령(Court bail orders)는 총 6,620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한 수치이며, 이 숫자는 전체 대상자의 35%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법원 보석 명령이 적극적으로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부터 the covid pandemic' s impact에 대응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수치의 증가를 이끌어왔다.
- C) GPS tag(location monitoring device)를 착용한 범죄자는 총 8,935명으로 전년 동기의 5,750명에 비해 55% 증가한 수치이며, 이것은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의 47%에 해당한다.
- D) Alcohol monitoring device를 착용한 범죄자는 총 2,6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3% 증가한 수치이다.

본 통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달리, 최근 England와 Wales에서는 Location monitoring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단순히 범죄자의

---

31) Electronic Monitoring Statistics Publication, England and Wales: September 2023 from UK Governmet

채택 여부만을 확인하는 1세대 방식의 전자감독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석방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와 달리, England와 Wales에서는 법원 보석 명령(Court bail orders)에 전자감독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4. EMS(Electronic Monitoring Services)

##### 1) Private company(전자감독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

현재 England와 Wales에서의 전자감독은 법무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인 Capita Business Services Ltd.<sup>32)</sup>가 운영하고 있다.(2014년에 기존 민간 업체인 G4S와 Serco로부터 전자감독 계약을 인계 받음)

Capita는 전자감독이 개시되면,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전자장치(Home device and tag)를 설치(명령 종료시 제거 포함)하고, 장비를 점검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담당하면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잠재적인 위반 사례 등에 대해 YOT(Youth Offending Team),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EMS는 전자감독이 시작되면 24시간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설치를 마쳐야 하며, 해당 소년 범죄자에게 전자감독의 원리와 충전방법, 유의사항 등을 고지해야만 한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전자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EMS는 전자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접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2) EMS의 운영 능력

England와 Wales의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EMS가 얼마나 전자감독 업무를

---

32) 영국, 유럽,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Capita Public Service, Capita Experience, Capita Portfolio의 3개 부문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사법과 관련한 주요 사업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출소자 지원 사업, 전자감독 등이 있다.



잘 수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실있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영국의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EMS의 전자감독 운영 능력에 대해 간단한 통계를 공지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통해 EMS가 대체적으로 규정된 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J 2023)

2022년 5월에 법무부가 발표한 EMS의 전자감독 수행 능력(2022년 1월~3월)은 다음과 같다.

- ① 장비 설치 관련(Equipment installation and subject induction)
  - 지정된 시간 내에 첫 번째 설치 시도 : 97.1%
  - 지정된 시간 내에 추가 설치 시도 : 88.5%
- ② 장비 재설치 관련(Equipment re-installation)
  - 지정된 기간 내에 재설치 시도 : 93.5%
- ③ 장비 제거 관련(Equipment removal)
  - 지정된 기간 내에 제거 시도 : 96.8%
- ④ 장비 제거(보석 소송 관련)(Equipment removal, bail cases)
  - 지정된 기간 내에 제거 시도 : 96.1%
- ⑤ 위반 후 장비 점검(Equipment check following tamper violation)
  - 지정된 시간 내에 점검 시도 : 94.3%
- ⑥ 전자감독 개시에 필요한 정보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required to commence orders)
  - 지정된 기간 내 정보 요청 : 91.4%
- ⑦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통금 시간 위치에 전화(Call to curfew location following possible violation)
  - 지정된 기간 내 전화 : 97.4%

### 3) EMS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감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법무부에서 총괄하여 감독하고 있다. 전자장치와 운영 프로그램의 제작과 개발은 민간 업체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담당 팀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상주하여 법무부의 감독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업무는 온전히 법무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sup>33)</sup>

이에 비해 England와 Wales의 경우, 독립된 민간 업체에서 전자감독을 운영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과거 2013년도 England 감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업체(G4S와 Serco)에서 정부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특히 실제로 monitoring 대상이 아닌 범죄자에 대한 monitoring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있다. 또한 미국 등 다른 계약국가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영국 정부에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Hucklesby, A., Holdsworth, E. 2016)

## 5. 전자감독에 대한 규정 준수

### 1) 규정준수와 관련된 연구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공식적인 데이터는 영국정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관련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위반율을 확인할 수 있다.<sup>34)</sup>

#### ① Airs et al, 2000; Dodgson et al, 2001; Hucklesby, 2009b; NAO, 2006; Walter, 2002

---

33)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여 자체적으로 전자장치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개발에 실패할 경우 많은 시간과 돈만 소비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제도 시행 후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장치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34) 사실, 전자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범률이 아닌 준수사항 위반율에 대한 통계는 산출하기 매우 어렵고, 비교 또한 쉽지 않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유치원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을 때, 출입금지 구역을 반경으로 지정할지 아니면 사각형으로 지정할지, 또는 10초 위반시 경보가 울리게 할지 아니면 1분 위반시 경보가 울리게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준수사항 위반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보석 조건 전자감독, 외출제한명령(curfew), 재택구금(HDC, Home detention curfew)을 실시할 경우,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율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② Dodgson and Mortimer (1999)

- Dodgson과 Mortimer(1999)의 연구에 따르면, 재택구금을 부과받은 전자감독대상자의 95%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Sugg et al(2001)

- 외출제한명령(curfew)과 관련한 위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감독을 통한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범죄자 261명 중 80%가 외출제한명령명령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Walter' s (2002)

- 마찬가지로 Walter(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인 외출제한명령 시행 후 첫 해의 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완료율이 83%에 달한다고 하였다.

6. 관련 장비 (Hucklesby, A., Holdsworth, E. 2016)

전자감독에서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는 역시 범죄자에게 직접 부착하는 부착장치(Tag)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RF(Radio Rrequency) 방식의 부착장치와 Alcohol Monotoring 부착장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RF Type Device(라디오 주파수 방식 부착장치)

외출제한과 통금명령 확인을 위해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전자장치는 1989년에 도입되었다.

이 장비는 대상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개인식별장치(PID)와 홈모니터링 장치(대상자의 주거지에 설치)장치로 구성된다. PID에 부착된 배터리는

충전이 불가능한 방식이며, 최대 350일 동안 사용 가능하다.<sup>35)</sup> 따라서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 사용 가능일이 도래하기 60일 전에 새로운 PID로 교체된다. PID는 관리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장비를 통해서만이 공식적으로 탈착과 부착이 가능하다.

## 2) Alcohol Monitoring Device(알코올 모니터링 부착장치)

범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알코올 모니터링 전자장치는 2020년에 도입되었다.

이 장비는 경피에 접촉이 가능한 발목 장치와 Monitoring Box로 구성되어 있다. 부착장치는 30분 마다 알코올 섭취량을 확인하기 위해 발목의 땀을 샘플링하고, 하루에 두 번 미리 정해진 시간(통상 야간)에 Monitoring Box에 정보를 제공한다. AAMR은 미국에 기반을 둔 SCRAM이라는 웹 기반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제공된 데이터는 기지국에서 SCRAM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된다. 그리고 모든 위반사항은 매일 EMS에 보고된다.

---

35) RF 방식의 전자장치의 경우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충전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제작을 하여도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력 소모가 많은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전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운영중에 있다.

### 3) 전자장치별 활용 용도

	RF형	GPS형	Alcohol Check형
<b>사회 내 명령(community orders)</b>			
외출제한	○	Location Monitoring 부과시 가능	NO
출입금지구역 (exclusion zone)	NO	출입금지구역(exclusion zone)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NO
출석 의무 확인	NO	위치정보 확인으로 가능	NO
위치 확인	NO	위치정보 확인으로 가능	NO
음주 확인	NO	NO	○
<b>가택구금 가석방(HDC): 죄의 종류를 불문한다.</b>			
외출제한	○	ocation Monitoring 부과시 가능	NO
출입금지구역 (exclusion zone)	NO	출입금지구역(exclusion zone)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NO
출석 의무 이행 확인	NO	위치정보 확인으로 가능	NO
위치 확인	NO	위치정보 확인으로 가능	NO
음주 확인	NO	NO	NO
<b>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한 가석방 (종신형, 부정기형, 연장형의 경우에만 한정)</b>			
외출제한	○	Location Monitoring 부과시 가능	NO
출입금지구역 (exclusion zone)	NO	출입금지구역(exclusion zone)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NO
출석 의무 확인	NO	위치정보 확인으로 가능	NO
위치 확인	NO	위치정보 확인으로 가능	NO
음주 확인	NO	NO	NO

\* HMIP, Th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as a tool for the Probation Service in reducing reoffending and managing risk, p.47.

Radio Frequency를 활용한 전자장치는 거주지에서의 외출제한만을 목적으로, Alcohol Monitoring 전자장치는 음주 여부 확인만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반면, GPS를 활용한 위치추적형 전자장치는 특성상 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7. 전자감독의 효과

### 1) 비용 절감

England와 Wales의 전자감독의 재범 감소 효과 등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회의적인 연구도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자감독제도는 교도소의 과밀 수용 해소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하였으며, 이는 곧 비용 절감으로 나타났다.

Capita의 자료에 따르면, 보안 위험이 낮은 수감자를 카테고리 C 교도소에 수용하는 데 연간 36,000 파운드의 금액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전자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2,000 파운드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2006년에 발표된 하원 공공회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이 교도소보다 1일 기준으로 약 70파운드 가량 저렴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House of Commons Public Accounts Committee, 2006](#))

이처럼 절감된 비용은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 등 다른 영역에 사법활동에 재투자 될 수 있다.

## V. England와 Wales의 청소년 대상 전자감독

### 1.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정부의 처우 동향

영국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법 처우 동향은 각 시대별로 다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응보적 처벌과 성행개선을 위한 교화라는 두 가지 해결방안을 두고 항상 고민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1) 1970년대

1970년대 영국의 청소년 사법 시스템은 범죄에 따른 응보적인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성행개선 등의 복지적인 해법에 더 무게를 두고 소년 범죄자를 관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을 통해 처벌보다는 교정과 교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년 사법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였다. 2010년에 발표된 소년법원의 양형에 관한 보고서는 이러한 ‘1970년대의 소년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 2) 1980년대

1980년대에는 소년 범죄자에 대해 구금 정책을 활용하기 보다는, 지역 사회의 중간 처우(intermediate treatment)를 통해 사회내에서 이들을 교화하려는 정책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비행 청소년들에게 교육, 직업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중시했으며, 청소년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인 제도 마련 등에 힘썼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고위험 청소년 범죄자들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 3) 1990년대

1990년대에는 범죄의 경중에 따른 단계적인 접근법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정, 시설 내 처분 등 단계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어, 처벌적인 조치와 사회적 재활 프로그램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1990년대에 청소년 범죄자에 의한 강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치료적인 방식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4) 2000년대

2000년대 소년 사범의 핵심은 계량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외부 기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소년 범죄자 처우가 구조화되는 형태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2000년에 설립된 YOT를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회복적 사범이 강조되었다.

#### 5) 2010년대

범죄 청소년들이 사회에 재통합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강조되었으며, 그 예로는 교육, 직업훈련, 상담 등이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어 관련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 2. 청소년 범죄 관련 주요 통계<sup>36)</sup>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영국의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2022년에 Youth Justice Board가 발표한 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주요 통계(2021~202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검문

---

36)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 to 2022 from Youth Justice Board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검문 건수는 약 94,9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18% 감소했고, 10~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검문 및 수색의 대다수(78%)는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9%는 체포로 이어졌다.

## 2) 청소년 사법 제도에 최초 진입하는 청소년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는 약 8,000명의 최초 진입자(FTE, First Entrant)가 있었으며, 청소년 FTE 수는 지난 10년간 매년 감소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약 10% 감소하였다.

## 3) 청소년 범죄로 입증된 범죄

청소년이 저지른 입증된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약 33,000건이었다.

## 4) 청소년에 대한 선고

청소년이 법정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1,400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7%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평균 형량은 22.8개월로 전년 대비 6개월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는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사례로 인한 것일 수 있다.

## 5) 구금된 청소년 관련

연중 평균적으로 약 450명의 청소년이 구금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9% 감소한 수치이며 기록상 가장 낮은 수치이다.

## 6) 재범 관련

입증된 재범률은 31.2%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감소했다. 청소년들이

저지른 전체 재범 건수는 약 17,600건이며, 이것은 재범자당 평균 3.54회의 재범(빈도율)을 나타낸다. 전년 대비 3% 감소했지만, 10년 전(3.18)보다는 여전히 11% 높은 수준이다.

## 7) 성인 범죄자 통계와의 비교

형사사법제도에 처음 진입한 사람(FTE)은 약 88,600명이었으며, 그 중 약 8,000명(9%)이 청소년(10~17세)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에 대한 FTE의 수는 해마다 감소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청소년 FTE의 수는 78% 감소했다.

## 3. 전자감독의 활용 분야

먼저 청소년을 위한 전자감독은 내무부(Home Office)가 Norfolk 지역의 10~1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electronic curfew orders에 대한 시범 실시를 수행하면서 시작되었다. (Whitfield, D. 1997)

England와 Wales에서 청소년 범죄자에게 전자감독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이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교정당국과 보호관찰 조직(HMPPS), 청소년 사법위원회(YJB : Youth Justice Board), 선고위원회(CPS : Crown Prosecution Service) 등의 기관에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런 기관들에서 다양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England와 Wales에서는 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감독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내처우와 시설내처우가 아닌 중간적인 처우로서 활용하고 있다.

### 1) CI(Civil injunctions) and CBO(Criminal Behaviour Order)

CI와 CBO는 민법과 형법의 요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명령으로써, 민법에 따라 부과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Párkányi 2021)

Civil injunctions은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조치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이며, 폭행, 괴롭힘 등이 Civil Injunctions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Criminal Behaviour Order는 영국에서 범죄 행위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자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법적 장치 중 하나이다. CBO에는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특정 인물과의 접촉 금지 등이 있다.

민사 체계(CI) 내에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또는 위반이 형사 범죄(CBO)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감독이 부과될 수 있다. (Párkányi 2021)

## 2) 외출제한명령(curfew orders)

형사사법법 1991(Criminal Justice Act)은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하루 최장 12시간까지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전자감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1997년의 범죄양형법 1997(Crime Sentences Act)에서는 1991년에 발표된 영국의 형사사법법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16세 미만 소년범죄자에게도 전자감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3조). 이 경우 16세 미만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 외출제한명령은 3개월까지 가능하다.

2000년에 발표된 형사법원 양형권한법(Powers of Criminal Courts Act)에서도 영국에서 모든 연령의 범죄자를 상대로 6개월 동안 전자감독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6세 미만 소년범죄자에게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전자감독 외출제한명령을 총 3개월 동안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37조).

## 3) 보호관찰 감독명령(supervision orders)

감독 명령은 지역 당국에 아동에 대한 '조언하고, 지원하고, 친구가 되어 주는'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청소년은 특정 장소에 거주하고, 특정 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고, 감독 명령은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총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감독 명령에는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요구 사항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보호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감독 명령에 포함되기 전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자는 아동의 주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관이 아동과 합당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보호자란 아동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영국에서 감독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전자감시는 주로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사회에서 소년범죄자의 일상생활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일정기간 소년으로 하여금 보호관찰관 등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것을 처벌의 한 형태로 감독명령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전자감독은 최대 6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다.

감독명령에 대한 근거규정은 2000년 「형사법원 양형권한법」(Powers of Criminal Courts(Sentencing) Act 2000) 제6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YRO(Youth Rehabilitation Orders)

영국에서 청소년 재활 명령(YRO : Youth Rehabilitation Orders)은 10세~17세의 청소년 범죄자를 위해 고안된 지역사회 기반 형벌이다. 이는 “2015년 형사사법 및 법원법“에 따른 법률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판사가 옵션 메뉴의 요구 사항을 첨부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선고(community sentence) 중 하나이다.

2009년에 도입된 YRO는 법원이 처벌, 대중 보호, 재범 감소 및 배상을

위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공동체 형벌(community sentence)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이 YRO를 부과할 때에는 명령 요건이 완료되는 기간을 정해야 하며, 이는 명령이 발효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자감독은 최소한 하나의 다른 청소년 재활 요구 사항(2020 선고법 185(4)항)과 함께만 사용할 수 있다. 통행금지 요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지만, 배제 또는 출석 센터 요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부과될 수도 있다. (Párkányi 2021)

YRO를 부과하려면 범죄가 “충분히 심각“해야 하지만, 투옥 가능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며, 범죄가 “충분히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법원은 YRO를 반드시 부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준수사항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법원은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 청소년이 심각한 피해를 입힐 위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또한 YOT는 보고서의 일부로 평가하고 법원에 고려할 중재 수준을 권고해야 한다.

##### 5) 가퇴원 및 훈련명령(DTO): detention and training order

영국에서 DTO는 제일 먼저 1988년 Crime and Disorder Act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2002년에 구금 및 훈련명령을 소년범죄자에게 부과할 때 그 명령 이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전자감시 규정이 명문화되었다.(동법 제73조-제79조)

※ 가퇴원 및 훈련명령은 소년원 퇴원 후 보호관찰을 의미한다. 2000년의 「형사사법 및 법원 서비스법」은 형기완료로 시설을 떠나는 소년범죄자가 퇴원 후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효과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전자감독을 명문화 하였다.

본 명령은 저위험 소년범죄자보다는 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년에 대한 구금 및 훈련명령으로 부과된다. 가퇴원 및 훈련 명령(DTO)은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형이다. 하지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습범이어야만 한다.

## 6) 보석 조건(condition of bail)

2001년의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에 의거하여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소년 범죄자에 대해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먼저 12세~16세의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11개 관할 지역에서 우선 실시(2022년 4월)하였다. 이후 2002년 6월에 England와 Wales 전역으로 확대 되었다. 또한 2002년 7월에는 17세로 대상의 연령이 상향되었다.

전자감독은 청소년이 폭력 또는 성범죄 또는 성인의 경우 최소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보석금 위반 전력이 있는 범죄로 기소된 경우 보석 조건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보석금이 거부되면 해당 청소년은 지방 당국이 운영하는 숙소(local authority accommodation)로 보내질 수 있으며, 이것은 구금시설로 이송되기 전에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 당국이 운영하는 숙소의 유형은 다양하며 주거 보호(residential care) 및 재구속 위탁 양육(remand fostering)을 포함하며, 이것은 잠재적으로는 동일한 숙소에 거주하는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다른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7) HDC(Home Detention Curfew)

성인과 동일하게 선고법 2020의 250항에 따라 성인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청소년, 즉 심각한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은 자택 구금 외출제한명령(HDC)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

이때 수감자가 조기 석방되기 최대 135일 전에 석방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청소년에게 HDC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는 성인과 동일한 절차를 반영한다. (Hucklesby and Holdsworth, 2016)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HDC가 적용될 경우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 적격성: 최소 4주 이상 4년 이하의 구금형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HDC를 부과받을 수 있다.
- 평가: HDC가 허용되기 전에, 해당 청소년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대중에 대한 위협, 구금 기간 중의 개선 정도 등과 같은 요소가 교도소 당국에 의해 평가 되어야 한다.

## 8) Intensive Surveillance and Support Programme

ISSP은 범죄 행위에 연루된 후 재범 위험이 높거나 사회 복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범죄자에게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구조화된 개입 접근 방식이다.

2001년부터 England와 Wales에서는 2001년부터 소년사법위원회에 의해 15~17세의 심각하고 상습적인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감시 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집중적인 감독과 전자감독을 통한 외출제한명령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소년보호 관찰대상자에게 야간에는 12시간 동안의 전자감독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하고, 그와 더해 교육 명령을 병합하여 부과하는 지역사회 교정명령에 해당한다.

**【청소년 대상 주요 전자감독 부과 방식에 따른 개요】**

	개요	청소년 대상 정책
CIVIL INJUN CTION	<p>As part of a supervision order, EM may be imposed for securing ‘compliance with the curfew requirement’ (s.6(1), Schedule 2, AbCP Act, 2014)</p> <p>- 감독 명령의 일환으로 ‘외출 제한명령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감독이 부과될 수 있음</p>	<p>The policy suggests that EM is meant to control curfews (YJB, 2014b).</p> <p>- 관련 정책에 따라 전자감독은 외출제한명령 시간을 통제해야 함</p>
CBO	<p>EM may be imposed according in line with the rules specified in youth justice measures (s.30 (1-2), AbCP Act, 2014)</p> <p>- 전자감독은 청소년 사법 조치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p>	<p>The policy suggests that EM is meant to control curfews or exclusion zones (YJB, 2014b)</p> <p>- 정책은 전자감독이 통금 시간이나 출입금지 구역을 통제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함</p>
YRO	<p>EM means a “requirement for securing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the offender’s compliance with other requirements imposed by the order during a particular period” (s41 Sentencing Act 2020). The Schedule further implies that an EM requirement can only be assigned on a curfew, an attendance centre requirement or an exclusion requirement (s.44 (3) Schedule 6 Sentencing Act 2020)</p> <p>- 전자감독은 ‘특정기간 동안 명령에 의해 부과된 기타 요구사항을 범죄자가 준수하는지 전자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의미</p>	<p>The policy explains that EM should be used when ‘the child is subject to a curfew and is tagged to ensure compliance’ (YJB, 2019d).</p> <p>- 정책에서는 ‘청소년에게 외출 제한명령이 적용되고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태그가 지정될 때, 전자감독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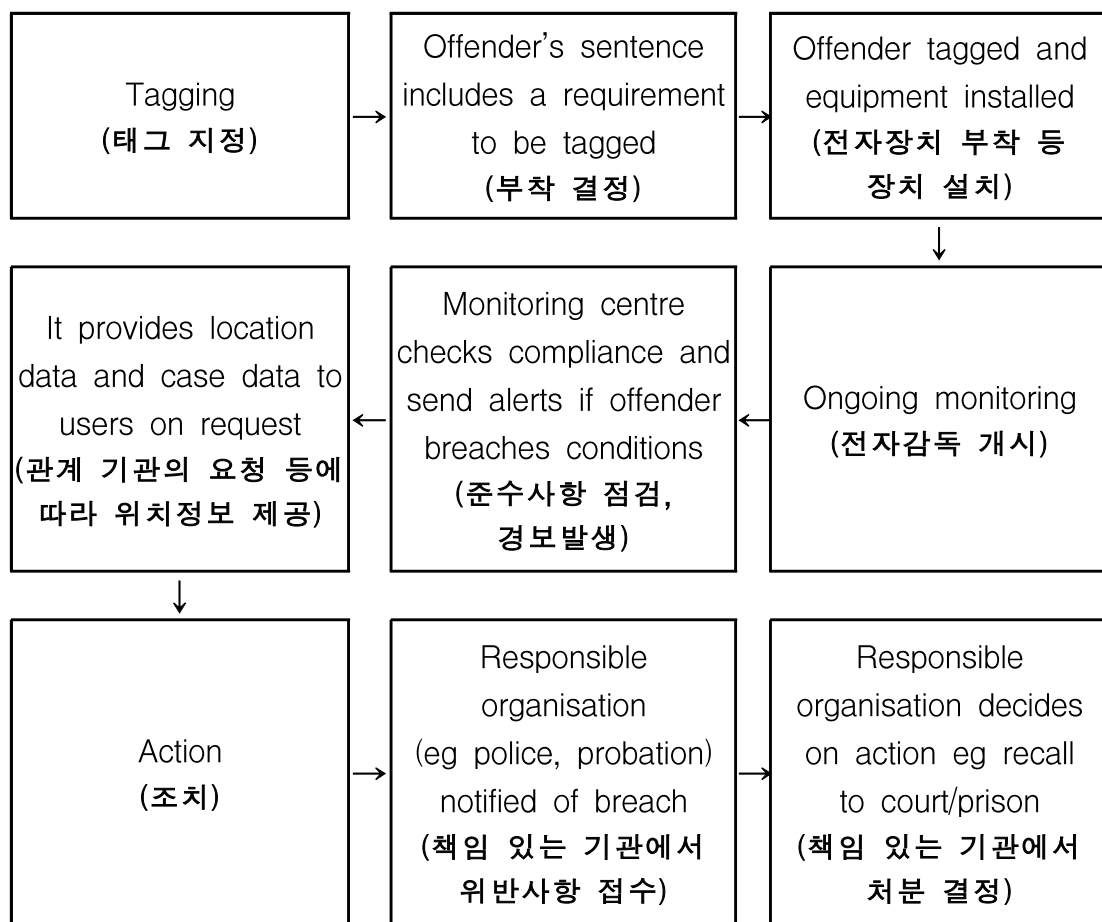
	개요	청소년 대상 정책
DTO	[no statutory reference]	<p>[EM may be used to monitor curfews, exclusion zone, attendance at designated place or trail monitoring (MoJ, 2021b).</p> <p>- 전자감독은 외출제한, 출입 금지구역, 지정된 장소 출석 또는 트레일 모니터링을 모니터링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음.</p>
BAIL (보석)	<p>Secures 'a person's compliance with any other requirement imposed on him as a condition of bail' (s.3(6ZAA&amp;6ZB Bail Act)</p> <p>- 보석 조건으로 부과된 기타 조건의 준수를 보장</p>	<p>The policy addressed both modalities of EM (a condition and as part of ISS) as 'electronically monitored curfews' (YJB, 2019e).</p> <p>- 이 정책은 전자감독을 통해 외출제한명령을 모니터링 하는 방식을 다룸</p>
HDC	<p>EM can be used to monitor compliance with another condition of release or their whereabouts (s.62(5A), Criminal Justice and Courts Services Act 2003</p> <p>- 전자감독은 다른 석방 조건 또는 소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p>	<p>[People released early from prison on HDC are subject to an electronically monitored (EM) curfew and/or location monitoring of exclusion zones, attendance at a certain activity or trail monitoring (4.5.6 MoJ, 2021a).]</p> <p>- HDC를 통해 조기 석방된 청소년들은 외출제한명령, 출입 금지구역에 대한 위치모니터링, 특정 활동 참석 또는 트레일 모니터링의 대상이 됨</p>

#### 4. 전자감독의 작동 방식

##### 1) 청소년 범죄자 대상 전자감독 절차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운영 절차는 성인과 유사하며, 우리나라와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청소년 대상 전자감독 운영 흐름】



##### 2) 청소년 대상 Location monitoring (HM Prison & Probation Service 2020 a)

GPS를 활용한 location monitoring은 2019년 말 London 청소년 사법부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에 England와 Wales의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Docherty, 2019)

RF 방식과는 달리 location monitoring은 GPS 기술을 이용해 24시간 내내 청소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센터와의 원활한 통신과 tag의 배터리 수명 연장을 위해 청소년의 주거지에는 Home Monitoring Unit도 설치된다.

부착장치를 착용한 청소년은 매일 1시간 동안 태그를 충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청소년은 벽면 충전기와 휴대용 충전기를 지급받게 되며 태그를 충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센터의 지원이 제공된다. EMS는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청소년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10%가 되면 추가 알림으로 태그가 진동하면서 진동하게 된다. 태그는 보통 한 번 완충하면 2일 정도 작동되지만, 배터리 수명은 신호 강도, 비준수 이벤트 준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location monitoring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준수 여부(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정의는 필요시 특정 날짜와 시간에 달라질 수 있음)
- 교육 프로그램 등 특정 활동에 대해 해당 청소년이 출석하였는지를 모니터링
- 청소년의 과거 위치 경로 확인(trail monitoring을 통해 EMS에 청소년의 이동 경로를 소급하여 요청할 수 있음)
- 야간 외출 제한 (location monitoring을 통해서도 해당 청소년의 야간 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위 준수사항의 조합

## 2) 전자감독 활용 방식

청소년 대상 전자감독의 경우, 외출제한(Curfew), 출입금지구역 모니터링(Monitored exclusion zone), 프로그램 출석 모니터링(Monitored appointment attendance), 트레일 모니터링(Trail monitoring)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부과된 전자감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외출제한과 출입금지구역 모니터링, 프로그램 출석 모니터링은 모든 종류의 전자감독에서 가능하며, 트레일 모니터링은 보석, 청소년 재활 명령 등이 부과될 시에만 가능하다.

**【부과 방식에 따른 전자감독 활용 방식】**

종류	외출제한명령 (Curfew)	출입금지구역 모니터링 (Monitored exclusion zone)	약속된 프로그램 등 출석 모니터링 (Monitored appointment attendance)	트레일 모니터링 (Trail monitoring)
보석 (Court Imposed Bail)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지정 숙소 체류 (Remand to Local Authority Accommodation)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청소년 재활 명령 (Youth Rehabilitation Orders)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가택구금 (Home Detention Curfew) (section 91)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구금 후 재활명령 (Detention and Training Order)	가능	가능	가능	가능

**3) 전자감독 개시를 위한 청소년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선결 조건**

청소년 범죄자에게 전자감독을 개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 해당 청소년은 전기 공급이 가능한 고정된 거주지에 상주해야함
- Location Monitoring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해야 함<sup>37)</sup>
- 전자장치 부착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참석해야 함

#### 4) 전자감독을 통해 청소년 범죄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

HM Prison & Probation Service가 YOT에 배포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을 통해 청소년 범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아래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 준수사항을 따르려는 청소년에 대한 부가적인 지원 가능
- 부정적인 영향에 저항하는 것을 지원
- 심리적 억제
- 청소년 복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 카운티 라인<sup>38)</sup>에 대한 악용 위험 감소
- 동료의 압력에 저항하는 능력 향상
-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배제

### 5. 위반 관련

#### 1) 기본 가정사항

청소년 대상 전자감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위반은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에는 장비 조작, 장비 제거, 직원에 대한 폭력, 외출제한명령 시간 전체에 대해 위반하거나, 외출제한명령 시간의 일부를 위반하는 등의 시간 위반이 포함된다.

---

37)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자감독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라’는 의무는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영토가 비교적 작고 통신망이 매우 발달되어 전자감독이 불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8) "카운티 라인"은 영국에서 도시 갭단이 마약 네트워크를 작은 마을이나 시골 지역으로 확장하는 범죄 착취의 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EMS(전자감독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민간 회사)는 아무리 작은 위반이라도 위반이 발생할 때마다 Monitoring Box(청소년의 주거지에 설치)를 통해 해당 청소년에게 연락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시 경고 서한을 발행하고 그 사본을 YOT에 전송한다.

## 2) 위반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HMPPS, 2019)

위반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모든 위반은 EMS에 통보된다. YOT 직원은 해당 청소년에 대한 감독 뿐 아니라 전자감독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담당하며, 그들은 위반이 제재조치 등을 진행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그들의 결정은 위반 정책 가이드에 따라 결정되지만, 실무자 선에서의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

### ○ 설치 실패(Installation Failure)

- EMS는 3번째 설치가 실패할 경우, 위반 경보를 접수 받음
- RO(Responsible Officer, 담당관)은 이메일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접수 받음

### ○ 출입금지구역 진입(Entry into an exclusion zone)

- EMS는 위반 경보를 접수 받고, 해당 청소년의 위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위반의 진위 여부를 확인
- RO는 이메일을 통해 위반 날짜와 장소 등 관련 정보를 받음(위반 중 해당 청소년 범죄자의 위치는 30분 간격으로 통보를 받게 됨)

### ○ 스트랩 변조(Strap tamper)

- EMS는 위반 경보를 접수 받고, 해당 청소년의 위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위반의 진위 여부를 확인
- 해당 청소년이 방문을 거부하거나 집에 없는 경우 EMS는 이메일을 통해 RO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 변조가 확인된 경우 위반과 관련된 정보를 RO에게 이메일로 통보
-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경우: 현장 담당자가 장비를 교체 후 모니터링 지속

### ○ 배터리 종료(Battery shutdown)

- 배터리가 20% 이하일 경우에는 EMS에서는 해당 청소년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10% 이하일 경우에는 태그가 진동하고 불이 켜짐
- 배터리 종료시에는 EMS는 배터리 종료 경보를 접수 받게 되며, 위반과 관련된 정보는 RO에게 이메일을 통해 통보됨

### ○ 프로그램 등에 출석 불참(Missed attendance)

- EMS는 위반 경보를 받게 되고, 해당 청소년의 위치를 확인하게 됨
- RO는 위반과 관련된 정보를 EMS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접수 받음

## 3) 위반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England와 Wales에서 전자감독을 부과받은 청소년의 준수사항 위반율은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위반률은 다양하며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위반이 반드시 제재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중 다수는 이후에 해당 명령을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완료율은 약 80%이며, 위반은 명령 시행 초기에 더 자주 발생하고 외출제한명령 시간이 짧을 때와 아침 일찍 끝날 때 덜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M Inspectorate of Probation 2023)

## 6. 재범률 감소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률과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전자감독제도를 통해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이 얼마나 감소하였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긍정론과 회의론이 공존하는 것 같다.

Jyoti Belur와 Amy Thornton 등이 실시한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효과성의 체계적 검토 연구’에 따르면, 재범 예방에 대한 EM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하며, 특히 성범죄자들의 재범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Belur, J. Thornton, A. Tompson, L. Manning, M. Sidebottom, A. and Bowers, K. 2020)

이에 비해 Janine Sanger가 실시한 청소년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재범 연구는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Sanger, J. 2006) 이 연구에서는 전자감독을 통한 통금명령을 받은 청소년과 반사회행동명령(Anti-Social Behaviour Order) 또는 최종 경고(Final Warning.)를 받은 청소년들과의 재범률을 비교 했다.

이 연구에는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전자감독 통금명령을 받은 Southampton 지역의 청소년 2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남자 22명, 여자 7명) 연구 결과 이들에 대한 재범률은 41%로 나타났으며, 2003년 1분기 영국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의 1년 이내 재범률은 36.9%인 것으로 나타났다.

Janine Sanger는 본 연구를 통해 전자감독이 재범 억제에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다양한 요인<sup>39)</sup>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하였다.

---

39) 예를 들어 Southampton 지역의 경찰은 범죄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청소년 범죄자 검거에 더 높은 순위를 두었을 수도 있는 반면, 타 지역 경찰들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더 집중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VI. 전자감독을 넘어서

지금까지 England와 Wales의 전자감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와와의 차이점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우리나라와 England·Wales의 전자감독제도의 주요 차이점】

	우리나라	England·Wales
도입의 주목적	강력 성범죄의 예방	수용 과밀화 해소, 비용의 절감
부과 대상	성인	성인, 청소년
전자감독의 운영 방식	Location Monitoring 방식	Radio Frequency 방식 Location Monitoring 방식 Alcohol Monitoring 방식
Monitoring의 운영 주체	법무부	민간 회사

우리나라와 달리 청소년에 대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감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 다수의 학자가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사실, 전자감독제도 그 자체는 우리의 목표가 아닌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전자감독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University of Portsmouth에서 연구하는 동안 담당 교수인 Aaron Pycroft로부터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이에 전자감독을 변화이론<sup>40)</sup>에 대입하여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변화이론 모델들 중에서도 The CES Planning

40) 변화 이론은 조직의 업무에 대한 인과 모델, 추구하는 활동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포착하는 가치 있는 개념이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 변화(결과) 및 계획(활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다. (Harries, E., Hodgson, L., Noble, J. 2014)

Triangle 모델(Final goal, Intermediate outcomes, Activities)을 통해 우리의 목표와 활동 등을 정의해 보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전자감독 그 자체가 아니라, ‘범죄자의 재사회화’로 정의할 수 있고, 재사회화로 가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단기적인 변화는 재범률 감소로 설정할 수 있다. 결국 전자감독은 그러한 목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다른 Activities 들이 필요하며, 나는 University of Portsmouth 범죄학과 교수진들과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그 요소들을 Multi-agency working,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직원 전문성 강화 등으로 설정하였다.

## 1. Multi-agency working

Multi-agency working이란, 형사사법 시스템내에서 주어진 목적(재범 방지 또는 사회 복귀 등) 달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 그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협업하는 것을 말한다.<sup>41)</sup>

### 1) 우리나라 법무부의 Multi-agency working

한국의 법무부 본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우수사례를 모집하고 선정하여 전국의 모든 보호관찰관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몇가지 생각나는 우수사례를 언급하자면, 중병에 걸렸으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의료지원을 연계하거나,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자원을 연계하는 등 법무부

---

41) Sterling은 파트너십을 ‘일반적으로 어느 한 파트너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상태로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조직 사이의 공식화된 합의’로 정의하였다. (Pycroft, A. 2015a)

공무원이라면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 중 다수는 한 명의 보호관찰관의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진 사례이다. 이런 사례들은 ‘나라면 단 한 명의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라는 자문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며 쉽게 ‘그렇다’고 자답할 수 없게 한다. 보통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약 150명의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어떤 보호관찰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총 58개의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약 2,000명의 보호관찰 공무원들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즉 각각의 직원들이 자신만의 생각과 의지, 열정, 능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직원마다 동일한 Input에 대해 각각의 다른 Output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보호관찰소에서 자체적으로 형성한 파트너십은 법무부 시책의 변화, 직원의 인사이동, 기관장의 의지 등에 따라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일관성도 없이 진행되다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Noh, G. 2013)

## 2) 통합청소년팀(UAT : Unified Adolescent Team)

England의 통합 청소년 팀(Unified Adolescent Team, UAT)<sup>42)</sup>은 심각하고 복잡한 요구사항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해 설치된 소규모 다학문 팀으로 2002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아동 및 청소년 정신 건강 서비스(CAMHS), 아동 서비스, 교육 심리학 및 청소년 범죄 조직의 전문가들을 단일 팀으로 구성한 독특한 기관이었다. (Pycroft, A., Wallis, A., Bigg, J., and Webster, G. 2013)

---

42) 이 서비스는 포츠머스 와 햄프셔 남동부를 관할로 하였으며, 해당 서비스의 지리적 형평성 및 지역 CAMHS 입찰 프로세스 준비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10년 말에 종료되었다.

UAT와 관련하여 포츠머스 대학교의 Dr. Aaron Pycroft는 UAT에서 관리하는 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해석적 현상학적 분석(Interpre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을 활용한 질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UAT는 창의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이 건전한 애착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 헌신 및 혁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UAT가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소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한 명의 청소년에게 두 명의 팀원을 할당하여 서비스 부재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보호관찰관은 잦은 현지 출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대상자와의 면담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에는, 사무실에 남아 있는 다른 직원이 면담을 진행하게 되지만, 즉흥적으로 이뤄질 때가 많다. 이에 비해 UAT와 같이 한 명의 청소년에 대해 두 명의 직원이 할당되는 방식은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인다.

### 3) YOT(Youth Offending Team)

YOT는 지방당국에 의해 조정되고 청소년 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에 의해 감독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팀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또한 YOT는 1998년 Crime and Disorder Act를 근거로 하여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2000년 4월에 England와 Wales 지역의 모든 지방정부 별로 설립되었다.

YOT는 문제가 있는 청소년 뿐 아니라, 해당 청소년의 가정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 약물 문제, 취업, 교육, 빈곤 문제 등 사실상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관여하고 있다. 또한 한 명의 청소년에 대해 YOT의 여러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HM Inspectorate of Probation에서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YOT에 대한 45건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감사를 통해 법정 및 비법정 파트너의 개입을 조사하고 개별 사례(1,168건의 법원 처분 및 77건의 법정 밖 처분)를 평가했다. 감사 결과, YOT가 수행한 Multi-agency working은 관련 기관의 적절한 참여, 충분한 정보 공유 및 맞춤형 협력 작업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 바람직한 결과를 보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Multy-agency working 도입의 필요성

내가 근무하면서 만난 청소년들을 되돌아 보면 절대로 단 하나의 비행 원인을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은 없었던 것 같다. 보통 가정 불화 등으로 불량 교우를 만나고, 같이 음주와 약물에 빠지고, 약한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형사 사법 시스템 내에서는 약물 중독, 알코올 문제, 정신 건강 문제, 주거, 고용, 부채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다중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잡성이 증가된다. (Pycroft, A. 2012)

물론 청소년 범죄의 해결을 위해 보호관찰관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이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Multi-agency working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단, 복잡성이론에 따라, 투입되는 여러 노력에 비해 재범률 등의 변화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 2.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란, 처벌 위주의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범죄예방과 재사회화를 위해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법정책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내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영국의 소년 사법 시스템에서는 핵심 개념이다.

## 1) YOT의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YOT는 회복원칙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YOT의 주요 목표는 청소년 사법 서비스의 조정된 제공과 다기관 개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었다. (Crawford and Newburn 2003)

### ○ 회부명령(Referral Order)

YOT와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회부 명령이다. 회부명령은 초범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소년범죄자문단>Youth offender panel)에 출석하여 피해자 측과 만나서 향후 12개월 동안 본인이 범죄로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추후 계약의 이행여부에 따라 다시 사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자면, 범죄소년과 보호자, 피해자, 양 당사자의 지지자, 지역사회 관계자 등이 모여 범죄행위와 그 결과 등에 대하여 토론한다. 토론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청소년 범죄자가 보상을 하고 문제점을 다룰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 패널은 위탁 명령이 끝날 때에 다시 만나 명령의 수행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소년들은 배상명령을 받게 된다.

### ○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

경찰서장 연합회(Associo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에서 발간한 Restorative justice guidance and minimstandards를 통해 회복적 사법이 적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2세의 범죄자(이전 기록 없음)가 상점에서 어망(1.5 파운드 상당)을 훔쳤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이가 체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주인은 가게 물건을 훔치는 것이 자신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어머니도 참석해 아들에게 실망감을 토로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과하고 물건을 돌려 주었습니다.’ (The case is excerpted from ACPO, Restorative justice guidance and minimum stands, p. 12.)

## 2) 회복적 사법의 효과

회복적 사법의 효과는 몇몇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Shapland et al.(2011)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피해자 참여는 피해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청소년 범죄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참여율이 89%에 달한다고 했다. (Rebecca Banwell-Moore, 2022)

## 3)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 적용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통해 회복적 사법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소년 범죄자들의 재사회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와 교통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수강명령 집행시 실시하는 피해자의 감정 이해나 피해자의 역할 체험하기 등이 회복적 사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2009년에 시행된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4호에는 범죄자들에게 자신의 행위로 입힌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을 시행할 근거 또한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직원 전문성 제고

### 1) 공감 능력 향상

공감은 부부갈등, 직장에서의 문제, 친구관계의 어려움, 정치적 교착상태, 가족분쟁, 이웃문제 등 대인관계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Pycroft, A. 2012)

공감과 관련하여, 내가 처음 보호관찰을 담당했을 때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 나는 과거에 초보 보호관찰관임을 감추고 보호관찰대상자들과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항상 강한 어조로 면담에 임했었고, 지시적으로 그들을 대했다.

어느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대상자와 언쟁이 붙었는데, 그는 나에게 ‘이제 나도 성인인데, 왜 나를 함부로 하느냐’ 라며 강하게 항의하였다. 사무실에서 큰 언쟁이 발생하자, 선배 직원이 결국 중재에 나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그 선배는 나에게 말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애들을 대하면 우리 말을 따르지 않는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라.’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법원에서의 재판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소까지 오게 되는 청소년들은 이미 심신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이며, 암울한 앞날에 많은 것을 포기하기 쉽다. 그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면담 방식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절대로 ‘재범하지 마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하여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보호관찰관의 공감적인 자세는 단지 보호관찰대상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보호관찰관이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원동력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나는 보호관찰관으로서 공감의 중요성을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공감이 이해되고 사용되는 정도는 다양하며, 모든 사람이 공감 능력이거나 그것을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Pycroft, A. 2012)

하지만, 공감을 통한 보호관찰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면, 나와 같은 불필요한 시간 투자와 시행착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4. 팀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장기적인 프로그램 추진

##### 1) 팀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통상 관료조직에서의 회의라 함은, 각종 성과평가를 대비한 객관적인 수치(예 : 재범률 등)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관찰팀에서는 담당 case에 대해 팀원간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자리(매주 또는 매월)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창한 회의가 아니라도, 테이블에 모여 담당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의 효과와 보완점 등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견들이 정책 결정자(기관장 또는 본부)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에는 각종 사업을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 2)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추진

법무부가 하는 일(재범 감소, 갱생, 준범의식 향상 등)은 일반 기업들의 이윤추구 활동과는 달리, 단기간 동안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며, 재무제표 처럼 숫자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도 힘든 것들이다. 또한 복잡하고 다중적인 기관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중인 사업에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어,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될 수 있다. (Pycroft, A. 2015b)

나는 수많은 노력을 들인 정책들이 예상과 같은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몇 차례 보았다 복잡성 이론에 따르면, 변화(결과)가 반드시 입력(우리의 노력과 예상)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ycroft, A., Wolf-Braniginb. M, 2015)

하지만, 단기적이면서 구체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주로 보여주기식으로 일하게 되기가 쉽다. 관리자가 바뀌는 등의 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사업이라 할 지라도 우리가 기대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그 효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 VII. 결론 및 제언

2000년대 이후 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보호관찰의 경우 법무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12~13%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년 사법 시스템을 통해 주로 소년범에게 부과하는 조치는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구금이라는 양 극단의 옵션에 한정되어 있다.

청소년은 범죄를 단념하고 범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다. 이때 잘못된 개입은 범죄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청소년이 형사 사법 제도에 연루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ycroft, A., Wallis, A., Bigg, J., and Webster, G. 2013)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소년범에 대한 전자감독 시행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자감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England와 Wales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 대한 전자감독의 시행은 일부 분야에 한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1. 청소년 대상 전자감독 활용 방안

#### 1) 사회내처우와 시설내처우의 중간 단계로 활용

첫째로, 보호관찰이라는 사회내처우와 소년원 구금이라는 시설 처우의 중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 소년원 구금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1개월, 6개월, 2년을 부과할 수 있으나, 1개월의 단기 구금의 경우에는, 실효성 대비 과밀수용과 비행학습과 같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1개월 소년원 구금을 전자감독을 활용한 야간 외출제한명령(영국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과 보호관찰로 대체하면 앞에서 언급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2) 소년원 임시퇴원시 활용

둘째로, England와 Wales의 가퇴원 및 훈련명령(DTO : detention and training orders)처럼 소년범이 소년원에서 임시퇴원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범죄자가 가석방되는 경우, 잔여 형기에 대해 전자감독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장기 소년원 처분(2년)의 경우에는 수용 생활 중 성적이 좋으면 잔여기간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부 임시퇴원 처분을 받고 있으나, 임시퇴원 기간 중 다시 재범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소년원 임시퇴원생들에 대해 전자감독을 통한 외출제한 및 보호관찰을 실시하면, 이들의 불량 교우와의 접촉 및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소년범에 대해서도, England와 Wales의 재택구금(HDC : Home Detention Curfew)처럼 잔여기간에 대해 전자감독 외출제한을 부과한다면 가석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3) 준수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활용

현재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음성감독시스템을 통해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것을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한 1세대 방식의 전자감독으로 대체하면, 수면권 방해 등의 부작용을 해결함과 동시에 더 정확한 감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특정장소 출입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를 부과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그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감독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주거지 및 학교·직장 등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다음 위치추적 방식의 전자감독을 활용한다면,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 등 보호가 절실한 사람들을 재범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 2.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

단순히 전자감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청소년을 지도·감독하여 그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사회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1) Multy-agency를 활용한 지도·감독

Muti-agency working을 활용하여 좀 더 시스템화된 보호관찰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보호관찰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두 고용하거나, 모든 종류의 기관과 직접적인 협력 창구를 개설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신 법무부 본부 차원에서 각 종 사회자원과의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보호관찰소별로 사회자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회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한다면, 기관별로 편차를 보이는 사회자원 활용 정도가 어느 정도는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보호관찰소의 다양한 업무실적에 대해 정기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고 있다. 그 평가의 범위에 Muti-agency working을 포함시켜 전국의 보호관찰소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활용

현재 일부 보호관찰소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입장이 되기, 피해자 면담 등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내가 사회봉사명령을 담당했을 때, 단순 노무 작업을 반복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보다는, 농촌에 가서 어려운 농가를 돕거나 오래된 집 수리에 참여하여 수혜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받은 청소년들의 반응이 더 좋았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 또는

간접적인 피해자들과 교류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입장을 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의 인성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3)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한 직원 전문성 제고

법무연수원 등에서 공감 및 면담 기법 향상 등을 주제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면담 능력을 상향 평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4) 팀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장기적인 프로그램 추진

청소년 담당 보호관찰팀원 간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자원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의견들은 상향식으로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되어, 현장과 본부가 활발히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지양해야 하며, 법무부가 하는 일 또한 복잡성의 이론이 적용되는 사회임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3. 낙인효과 감소, 자존감 향상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문제는 낙인효과이다. 사실 낙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소년에 대한 전자감독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전자감독 도입 이후 보호관찰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잇달았으며, 이에 법무부는 전자감독에 대한 인식개선과 낙인효과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 주민들은 보호관찰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 차원에서는 전자감독이 경미한 청소년 범죄자에게 부착될 수 있으며, 이 과정 또한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우리의 이웃이 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을 지금

과 같이 지속해야 한다.

또한 전자감독을 부과받은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자감독을 부과받은 청소년을 위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호관찰관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 판사, 학교 선생님,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사회자원들이 연계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다.

## References

- Airs, J., Elliott, R. and Conrad, E. (2000) Electronically monitored curfew as a condition of bail – report of the pilot. London: Home Office
- Bae, S. (2022) Review of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as a measure to prevent recidivism of juvenile offenders
- Belur, J. Thornton, A. Tompson, L. Manning, M. Sidebottom, A. and Bowers, K. (2020)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offend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ume 68, May-June 2020, 101686
- Capita, (2023) / <https://www.capita.com/services/services-police-forces-and-judiciary/electronic-monitoring>, (Accessed : 7th December 2023)
- Constitutional Court in Republic of Korea, 2011 Hunba 89 decision on 27th December 2012.
- Crime analysis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each year
-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al report for the fourth quarter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2022)
- Docherty, S. (2019) Location Monitoring is Coming to London, *YB Bulletin*, 145.
- Dodgson, K., Goodwin, P., Howard, P., Llewellyn-Thomas, S., Mortimer, E., Russell, N. and Weiner, M. (2001) Electronic monitoring of released prisoners: an evaluation of the Home Detention Curfew scheme.
- Dodgson, K. and Mortimer, E. (1999) Home Detention Curfew –The first year of operation, *Research Findings* 110. London: Home Office
- Dong-A Ilbo (12th October 1999), page A7 ('Telesurvey' – '51.4%, human rights violations in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 Electronic Monitoring Statistics Annual Publication (March 2023) from Ministry of Justice, United Kingdom
- Electronic Monitoring Statistics Publication, England and Wales (September 2023) from UK Government
- Electronic Monitoring Strategy (June 2022) from Ministry of Justice, pp 6.



- Harries, E., Hodgson, L. and Noble, J. (2014) Creating your theory of change, NPC' s practical guide, pp 2.
- Fay, S. J. (1993) The rise and fall of tagging as a criminal justice measure in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21, pp 301~317.
- HM Inspectorate of Probation (April 2021) Multi-agency work in youth offending services, *Research & Analysis Bulletin*
- HMIP, Th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as a tool for the Probation Service in reducing reoffending and managing risk, pp 47.
- HM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HMPPS) (2019) Location monitoring Information for YOT staff.
- HM Prison & Probation Service (2020 a ) Location monitoring Information for YOT staff.
- HM Prison & Probation Service (2020 b ) Trail monitoring: An overview for YJS staff
- House of Commons Public Accounts Committee (2006)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adult offenders: Sixty-second report of session 2005-06. London: The Stationary Office
- Hucklesby, A. (2009b) 'Understanding offenders' compliance: a case study of electronically monitored curfew orders' , *Journal of Law and Society*, 36: pp 248-271.
- Hucklesby, A. and Holdsworth , E. (2016) *Electronic Monitoring in England and Wales*
- Jo, Y. (2011) Research on electronic surveillance of foreign juvenile offenders (focusing on the UK and US)
- Jo, Y. (2013) Consideration of the discussion on introducing electronic surveillance for juvenile probationers (focusing on the UK case)
- Justice Data (March 2023) from UK government
- Kim, B. (2019) Research on measures to improve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ts in early stages in society, pp 2.
- Kim, G. (2013) A study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to juvenile offenders

- Kim, H. (2015) ‘Study on the adequacy of crimes subject to attachment orders and attachment periods to establish a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 Ministry of Justice Policy Research Report, pp 93.
- Kim, H. (2023) ‘Recent oper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UK EM, ‘Probation’ Volume 23, No. 2, Korean Probation Society, pp 101.
- Kim, I. (2005) Research on electronic supervision of criminals
- Kim, J. (2021)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electronic supervision of parole’, Correctional Studies Vol. 31, No. 3, Korean Correctional Society, pp 5.
- Jo, Y. (2010),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resistance theory of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Criminal Policy Research, 21(2), pp 289-317.
- Lee, H. (2009) A study on ways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violent criminals in the UK
- Lee, H. (2013)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after 5 years of implementation of the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 Lilly, J. R. (1990) ‘Tagging reviewed’ ,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9, pp 229- 245.
- Mair, G. and Nee, C. (1990) Electric Monitoring: The trials and their results. London: HMSO
- Ministry of Justice website, <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Accessed: 25th October 2023)
- MOJ 2023, <https://data.justice.gov.uk/contracts/electronic-monitoringperformance#chart-tab-ems-sl004a> (Accessed: 25th October 2023)
- Moon, H.(2020) Practic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EM, Probation Volume 20, No. 1, Korean Probation Society, pp 84-87.
- Naeil Newspaper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172629](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172629)
- National Audit Office (NAO) (2006)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adult offenders, London: The Stationary Office
- Nellis, M. (1991)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offenders in England and Wales: Rec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1, pp 165- 185.

- Nellis, M. (2003) Moving Probation Forward: Evidence, Arguments and Practice: Evidence, Arguments and Practice, edited by Wing Hong Chui, Pearson Education UK, pp 245-260.
- Nellis, M. and Bungerfeldt, J. (2013) Electronic monitoring and probation in Sweden and England and Wales: Comparative policy developments, *Probation Journal* 60(3), pp 278-301.
- Noh, G. (2013) Partnership establishment plan for community offender management (through review of MAPPA cases in the UK), *Probation*, Volume 13, No. 2, Korean Probation Society, p 38.
- Pamment, N. (2019) The decline of youth offending teams: towards a progressive and positive youth justice, *Multi-agency working in criminal justice*, p 271.
- Park, S. (2020) Review on measures to revitalize detention in society through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Correctional Welfare Research* No. 67, Korean Correctional Welfare Society, pp 152.
- Párkányi, E (2021)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youth justice system of England and Wales
- PHM Inspectorate of Probation 2023, <https://www.justiceinspectors.gov.uk/hmiprobation/research/the-evidence-base-probation/specific-types-of-delivery/electronic-monitoring>, (Accessed : 11th January 2024)
- Pycroft, A. (2012) Relationship and rehabilitation in a post 'what works' era, *Risk and rehabilitation*, pp 175-194.
- Pycroft, A., Wallis, A., Bigg, J. and Webster, G. (2013) Participation, Engagement and Change: A study of the experiences of service users of the unified adolescent team,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5(2), pp 422-439.
- Pycroft, A. (2015) Consensus, complexity and emergence the mixed economy of service provis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5, pp 422-439.
- Pycroft, A. and Wolf-Braniginb. M, (2015) Integrating complexity theory and social work practice; a commentary on Fish and Hardy
- Realmeter, a public opinion poll on juvenile offenders (9th September 2017)

- Rebecca Banwell-Moore (2022) The Delivery of Restorative Justice in Youth Offending Teams in England and Wales: Examining Disparities and Highlighting Best Practice
- Report on Social Cost Estimation of Crime (2010)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 Sanger, J. (2006) Electronic curfew orders and juvenile offenders, *The Police Journal* Volume 79, pp 1-100.
- Seo, W. and Jeongk J. (2022) Measures to suppress nighttime recidivism among juvenile probationers
- Shapland, Joanna, Gwen Robinson and Angela Sorsby (2011) *Restorative Justice in Practice: Evaluating What Works for Victims and Offenders*. London: Routledge.
- Souhami, A. (2007) Multi-agency working: experiences in the youth justice system, in D. Green, E. Lancaster and S. Feasey (eds), *Addressing offending behaviour*. Cullompton: Willan.
- Sugg, D., Moore, L. and Howard, P. (2001) Electronic monitoring of offending behaviour: reconviction results from the second year of trails, Home Office Research Finding 141. London: Home Office.
- Walter, I. (2002) *Evaluation of the National Roll-Out of Curfew Orders*, Home Office Online Report 15/02, London: Home Office.
- Whitfield, D. (1997) *Tackling the Tag*. Winchester: Waterside Press.
- Youth Justice Board (2015) *Final Report: Youth offending teams: making the differenc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victims and communities*
-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 2022) from Youth Justice Board
- 10-Year History of Electronic Monitoring in Korea (2018),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 2022 Crime Analysis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 2022 Crime White Paper (Institute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 2022 Fourth Quarter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al Report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 2023 EM-strategy (UK government)
- 30 Years of Probation in Korea (2019)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별첨 1】

## 국외훈련 관련 사진



개인 연구실



포츠머츠 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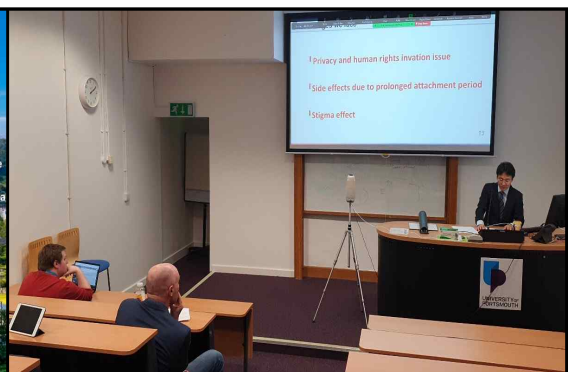
담당교수(Aaron Pycroft)



YOT 실무자(Sue Watt)와의 면담



연구 결과 발표 자료



연구 결과 발표

【별첨2】

## YOT 서면 질문 및 답변지

본 문건은 YOT의 업무에 관한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Hampshire YOT 실무자인 Sue Watt의 서면 답변임

My name is Hyeong Seok Yang and I am a civil officer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Republic of Korea.

I am researching on EM for juvenile offenders in England and Wales.

I woul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related to YOT's work, so I would be very grateful if you could answer my question.

○ **General questions about YOT**

1. What is the main mission of YOS and how does this differ from YOT?

Hampshire Youth Justice Service (HYJS), previously known as Hampshire Youth Offending Team (HYOT) has the following mission statement:

The Hampshire Youth Justice Service (HYJS) sits within the Children and Families directorate of Children's Services. HYJS works collaboratively with colleagues from Probation, Police and Health, as well as those specific services who touch on children's lives.

The potential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 impact on long term outcomes for children means HYJS seeks to prevent children from entering the justice system and diverting them away from this wherever possible. Where this is not possible, HYJS seeks to limit any harm whilst addressing and supporting children to go on to live crime free and fulfilling lives.

HYJS does this by working with those children who are identified as being at risk of committing an offence and preventing this from happening. Further, with those children who have reoffended, intervening to stop it happening again.

HYJS, HYOT and a YOS are all different names for fundamentally the same service. Different areas have different names but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lays out

statutory requirements for youth offending teams (YOTs). Other relevant legislation includes the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the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and the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These standards provide a re-statement of the requirements, with updates determined by subsequent legislation. These standards should be read and followed by strategic and senior leaders in local authorities to act in co-operation with:

- The Secretary of State
- police or local policing body
- providers of probation services
- local probation board
- integrated care boards (ICBs)<sup>1</sup>
- local health board.

This is required to make sure that, where appropriate, all youth justice services are available<sup>2</sup>. YOT management boards should provide strategic direction with the aim of preventing offending by children, and in accordance with section 40 of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ensure that the work of the YOT is defined in a publicly accessible youth justice plan that is co-ordinated with other local plans. Management boards should be satisfied that the following systems and policies are in place specific to children in justice.

2. How many personnel is your YOS comprised of, and what are their roles and professional backgrounds?

HYJS teams are comprised of YJS Officers, YJS social workers,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Officers, Therapeutic Wellbeing Officers, Restorative Justice Officers, Parenting Officers, specific YJS CAMHs practitioner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 Police Officers, Youth Crime Prevention (YCP) Officers,

Business Support providing administrative support.

There is a separate team called Turnaround which is funded from government grant to offer support and intervention for children at risk of entering the justice system.

3. How many juvenile offenders are supervised by the YOS?

I don't have access to this data at the time of writing.

For my team only:

YCP – 17

YJS – 43

NB. There are 4 geographical teams in HYJS but my team is one of the smallest so the above can't be multiplied by 4 to get the HYJS caseload size.

4. Of the above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how many are wearing electronic tags?

At present none (1 just ended his tag).

5. On average, what is the size of each practitioner's caseload?

10 - 13

6. Do all practitioners carry out the same roles irrespective of their professional background?

No, please see question 2 for specialist roles within HYJS.

#### **○ Questions related to juvenile offenders**



6. What is the referral process for YOS

From Court

From police via a Joint Decision Making Panel to consider out of court disposals, or having issued a child a Community Resolution (CR).

For YCP – referrals from other professionals such as school or police, as well as parents.

7. What interventions and activities does YOS provide?

Intervention tailored to the child and supported by an individual assessment to identify the risks and needs linked to offending. This can include awareness raising, information giving, diversion – positive activities to divert the child away from negative behaviour, support from specialist services within HYJS and referrals to support outside HYJS eg substance misuse services. Intervention delivered on consequences of further offending, including future sentences if further offences committed, anger management, One Punch programme, weapons awareness, self-esteem work, restorative justice – all assessments and interventions informed by child first principles and trauma informed practice.

The above are examples and not an exhaustive list.

- What is the average length of order and what is the average cost?

Average of 3 - 4 months for prevention cases and out of court disposals (OOCd)

Referral Orders – 3 months minimum, 12 months maximum

Youth Rehabilitation Orders – 6 months minimum, 3 years maximum

OOCds make up the majority of current HYJS workload with Referrals Orders next.

Prevention is a separate team.

8. What kind of support activities does YOS carry out for juvenile delinquents?

- Example) Job training, food support, living expenses support, and accommodation provided

ETE support offered within HYJS. Referrals made to other professionals where required, for example Children's Services and Supporting Families would be referred to if there were concerns regarding food, finances, housing.

9. What measures does YOS take against juvenile criminals who are at high risk of reoffending or who do not comply with guidance?

Children assessed as high likelihood of reoffending should be discussed monthly with YJS police.

If a child doesn't comply with their HYJS disposal it will depend on the disposal as to the action taken.

For Youth Diversion Programme (YDP) (HYJS name for Outcome 22), if warning letters and compliance meetings don't impact on compliance, these are referred back to our Joint Decision Making Panel and a different disposal or summons to court may be considered.

For Youth Conditional Cautions (YCC), warning letters are sent, then a compliance meeting with the manager and if still not complying with the YCC, their case is returned to the Joint Decision Making Panel and they could be summonsed to court.

For Referral Orders (RO), same warning letter and compliance meeting process and if no improvement, an emergency panel is held and the panel members decide what action to take. This could include for the Order to continue or for it to be returned to Court.

For Youth Rehabilitation Orders (YRO), same warning and compliance meeting process and if no improvement, returned to court for breach.

Detention and Training Order (DTO) – if child not complying with conditions of

release, warning letters sent and return to court if no improvement. This could result in the child being recalled to custody.

10. To what extent is the program compulsory for youth offenders at YOS and do they consent to participation?

YDP, YCC, RO, YRO and DTOs are compulsory. Prevention, CRs and Youth Cautions (YC) as well as Turnaround are voluntary.

11. Does YOS have a follow-up program for youth whose supervision has ended?

Voluntary intervention can be offered for some where there is an identified need.

**○ Questions regarding juvenile offenders wearing electronic tags**

12. What supervision methods does YOS utilize for youth wearing electronic tags?

Electronic tags are managed by EMS – electronic monitoring service. They can be added as part of a bail and support package, as part of a YRO or on release as part of a DTO/HDC (Home Detention Curfew). There would be YJS supervision

13. Does YOS take any actions to minimise the stigmatization effect on youth of wearing electronic tags?

No specific actions.

14. How is the use of electronic tags negotiated and addressed within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Is there evidence of its use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ers and the people they are supervising?

I don't have enough of a sample to comment.

15. What is the re-offending rate for your YOS?

Unable to provide at this time.

○ **Related to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employees**

16. What ongoing training is provided to YOS practitioners?

Online learning available throughout the year for practitioners. Social workers are required to complete and evidence CPD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maintain their professional qualification. Specific training available to address organizational needs for example, recent assessment training, ACE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utdoor Risk Assessment training, AIM training in relation to harmful sexual behaviour. Practitioners have personal goals as part of their individual professional development. Regular audits and observations support ongoing professional development.

17. To what extent is the availability of training able to meet new and emergent problems among young offenders?

Where a need is identified across the service as a result of audits or internal learning reviews, training needs then the HYJS will seek to address this.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attach a pamphlet or promotional material introducing YOT's work.

I don't have access to leaflets are present but please see the link below:

[Hampshire Youth Justice Service | Children and Families | Hampshire County Council \(hants.gov.uk\)](https://www.hants.gov.uk/children-and-families/youth-justice-service)